

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(補任)의 건

의안 번호	73
----------	----

제의연월일 : 2014. 9. 15.
제 의 자 :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

보임(補任) 위원	비 고
박 영 애 의 원	비례 / 문화복지

○ 활동기간 : 2014. 9. 15. ~ 2015. 2. 21.(약 5개월간)

< 참 고 자 료 >

○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56조

-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-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

- 제31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)**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,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

○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

- 활동기간 : 2014. 8. 22. ~ 2015. 2. 21.(6개월간)

- 활동목적 :

- 자연·인적·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점검
- 안전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
-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정책·제도개선 모색
- 안전관리를 위한 민·관 협력방안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
-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 정부·국회 제도정비 건의

- 위원회 구성 :

직 위	성 명	비 고
위원장	신 영 은 의원	남동2 / 기획행정
부위원장	허 준 의원	비 례 / 기획행정
	조 계 자 의원	계양2 / 문화복지
위 원	공 병 건 의원	연수2 / 문화복지
	김 경 선 의원	용 진 / 건설교통
	박 종 우 의원	남동4 / 교 육
	유 제 흥 의원	부평2 / 산업경제
	이 강 호 의원	남동3 / 교 육
	이 영 훈 의원	남구2 / 기획행정
	정 창 일 의원	연수1 / 산업경제
	최 석 정 의원	서구3 / 건설교통